

5.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 . 9 . 19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
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9월 4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9월 8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3. 9. 19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병 하)

가. 폐지이유

○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법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규정된 “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”(대통령령 제15903호, '98.10. 1) 및 “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”(총리훈령 제386호, '99. 7. 5)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기,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386호('98.12. 4)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